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6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12. 5.(수) 09:32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6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2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6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66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안건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 <의결안건 나>는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안건 가>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 외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공개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 마지막으로 비공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나.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18-69-571 ~ 577)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나>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지상파방송 재허가조건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주)광주방송, (주)지원,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경인방송 총 7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붙임 1>과 같이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재허가조건을 위반한 7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경과사항입니다. <가> KBS입니다. ‘17년 12월 K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의결을 하였습니다. 올해 5월 KBS는 재허가조건 연장 요청 문서를 제출하였고, 10월 방통위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11월 KBS는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OBS, <다> 광주방송, <라> 지원, 전주방송, 제주방송의 주요 경과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마> 경인방송의 주요 경과사항은 4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재허가 조건 및 위반내용입니다. 먼저 KBS입니다. KBS는 ‘17년도 재허가조건에 따라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기한 내에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개정·제출하지 아니하여 재허가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나> OBS입니다. OBS는 ‘16년도 재허가 시 제출한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계획’에 따라 ‘17년도 제작투자비 207억 원을 집행하여야 하나 ‘17년도 제작비 투자실적은 149억원으로 OBS가 제출한 최소 제작투자비에 미달되어 재허가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다> 광주방송입니다. 광주방송은 ‘16년도 재허가조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최소 제작비 투자비율’을 12% 이상 집행하여야 하나 ‘17년도 매출액 대비 제작비 투자비율은 10.3%로 최소 제작비 투자비율에 미달되어 재허가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라> 지원, 전주방송, 제주방송입니다.

이들 방송사업자는 '16년도 재허가조건에 따라 복수의 사외이사를 위촉하여야 하나 '17년도에 1명의 사외이사만을 위촉하여 재허가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마> 경인방송입니다. 경인방송은 '16년도 재허가조건에 따라 '17년도에 방송기술 관련 투자 금액 3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야 하나 '17년도 투자실적은 1억 9,400만 원으로 재허가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5> 피심인 의견입니다. 먼저 KBS는 주요 직위자의 인사가 '18년 5월 초에 마무리되어 '18년도 6월 말 까지 정원표 개정, 노사합의, 이사회 의결 등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직급체계 개편에 따른 승진비율 감축 등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노사 합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나> OBS입니다. OBS는 지상파방송사의 매출액,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으며, '17년도 매출액이 '16년도 대비 22억 원이 감소하였고, 다만 OBS는 재허가조건을 미이행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제작비 비율이 타 지역민방보다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타 민방과의 형평성, 시정명령의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완화된 시정명령 부과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 광주방송은 경영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사옥 건설을 추진하여 '17년도에 분양의 매출 276억 원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총 매출액이 증가하여 재허가조건을 미이행하였으나 방송 관련 매출액 대비 제작비 비율이 19.6%로 재허가 조건인 12%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그간 광주방송은 방송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고, 앞으로도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재허가 시 매출액 대비 제작비 비율에 대한 재허가조건을 변경하여 부가하는 등 정책적 배려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라> 지원, 전주방송, 제주방송 중 먼저 지원입니다. '17년 7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복수위촉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하고 '19년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주방송은 담당자가 착오하여 재허가조건을 미이행하였고, '19년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독립적인 사외이사 1명을 추가로 위촉하겠다는 의견을, 제주방송은 재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사외이사를 복수 위촉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인방송은 방송기술 투자비용에 대한 인천시의 예산지원이 지연되고 있으며, '17년도 미집행 투자액은 인천시의 재정지원이 없는 경우 내부 유보자금을 투입하여 집행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6>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KBS입니다. 재허가 조건을 준수한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 조건부가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정명령은 감사원의 '17년도 KBS 기관운영감사 지적사항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상위 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나> OBS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정명령은 재허가 기간 및 프로그램 제작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작비 투자 미이행 금액 59억 원을 '19년 말까지 집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 실적을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결산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미이행 금액을 '19년도에 이행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미이행 제작비에 추가하여 집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 광주방송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정명령은 재허가 기간 및 프로그램 제작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17년도 방송프로그램 제작투자비 중 미이행 금액 9.8억 원을 '19년 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라> 지원, 전주방송, 제주방송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외이사 후보 구성, 이사회·주총 등 위촉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및 '16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른 이행실적 제출 기한 등을 고려하여 '19년 4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인방송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재허가 기간 등을 고려하여 '17년 방송기술 투자금액 중 미이행금액 1억 2,500만 원을 '19년 말까지 집행하기로 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시정명령안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그동안 지상파방송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과 강제력에 대해 시청자단체나 일부 언론에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허가를 받을 때는 그럴 듯한 계획을 제출하고, 재허가 이후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행태가 결코 묵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재허가조건에 대해 철저하게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위반행위의 적발 시에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통해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보고된 안건은 원안에 모두 동의합니다. 각사에 부여된 시정명령에 대한 철저한 사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광주방송에 대해서는 '16년도 재허가 당시 이미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제작비를 산정하도록 처분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안대로 시정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재허가 시에는 심사할 때 매출액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방송환경 변화로 인해서 방송사업자들이 부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방통위가 내린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KBS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장이 새로 선임되면서 인사가 늦어지면서 직급조정이 늦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6개월 이내 하게 되어 있는 시한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다만, OBS 같은 경우 조금 어려운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BS는 아시다시피 지역민방 중 광고판매액이 최대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작년엔 광고판매 감소율이 OBS는 -8%로 약 17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역민방은 평균 -0.7% 정도 감소가 되어서 평균 0.9억 원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OBS 쪽 사정을 들어보면 OBS 쪽은 매출액의 84% 정도를 제작투자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 지역민방은 평균 매출액의 50% 정도를 제작투자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BS 쪽은 타 지역민방처럼 매출액의 약 10%~14% 정도 제작비 투자를 타 지역

민방이 하고 있다는데 그런 기준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BS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재허가 신청서상 나타난 제작비 투자를 아주 고정으로 조건으로 부여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 신청금액이 OBS가 얼마를 제작비에 쓰겠다고 재허가할 당시에 투자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 액수를 지키라는 것이지요?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아마 이렇게 광고가 감소할 줄 모르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타 민방들처럼 매출액 대비 얼마 이렇게 수정해서 제작비를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방법이 있습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 재허가조건에 대한 변경은 과년도에 부여했던 시정명령을 이행하라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조건의 변경은 힘들 것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차기 재허가 심사가 개최될 경우에 심사위원들께서 OBS의 재정상황 문제 등을 검토해서 조건 부가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부여했던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시정명령이 나가는 것이지, 거기의 조건을 다시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본건의 시정명령은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그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시정명령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OBS는 앞으로 1년 안에 미집행금액 약 59억 원에 물가상승률 곱하게 되면 약 60억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1년 안에 60억 원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대로 나가더라도 다음번에는 그런 조건을 다시 한 번 심사위원들에게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려운 중소 지역방송의 사정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재허가조건 부가하는 것, 최대한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재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방송사업자들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입니다.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지킨 것인데 우선 여기에서 KBS에 관한 것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도 있었고, 또 국회로부터 지적도 있었는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김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연하지 않겠지만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더더군다나 재원의 40%가 국민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사장 임명이 늦어지고, 임원들 보임시기가 늦어져서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석진 위원님 말씀에 꼭 반대의견을 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본뜻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OBS가 제출한 것을 보면 작년에 매출액이 22억 원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투자하겠다고 한 59억 원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만 해도 37억 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매출은 22억 원 줄었는데 자기들이 투자하겠다고 한 59억 원을 못 했다는 것은 매출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다음에 OBS와 광주방송 2개가 비교되는데 OBS는 절대액수를 투자금액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을 원래 OBS 사업자가 제시한 것이고, 방통위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재허가조건으로 부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매출액 대비로 할 수 없겠느냐는 의견도 주시는데 반면에 광주방송은 부동산 관련 부가사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큰 이익이 생겨서 매출 모수가 굉장히 커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되어서 사실 OBS와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경인방송이 기술투자를 하겠다는 돈 1억 2,500만 원 집행을 못 했는데 올해도 안 되면 내부 유보자금으로 투자하겠다고 방통위에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경인방송은 아시는 대로 올해 OBS 증자에 20억 원을 투여했습니다. 그 정도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기술투자 1억 2,500만 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허가 의무를 굉장히 해태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엄격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사무처에서 제시한 이 안에 동의하면서 사업자들이 방통위에 제출하고 있는 의견이 너무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행정적으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선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KBS 상위직급 축소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이번뿐만 아니라 매년 감사원 감사할 때마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상위직을 포함한 정원의 통합관리로 상위직 과다 운영이 지적되었고, 2014년도 동일하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재허가조건에 부가를 했는데 왜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감사원의 지적

사항, 즉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 피감기관은 개선방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개선결과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매번 감사 때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지요?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감사원 지적사항이 KBS에 전달될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조치에 관한 단서는 달지 않아서 사실상 권고 비슷한 식으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감사원 감사에 대해 정부기관, 공공기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준수해야 합니다. 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습니까? 이행하지 않으니까 방통위에서도 재허가 조건에 부가해서 이번에 점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100%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OBS 포함해서 지역민방들의 경우 특히 제작비 투자 미이행이 지적되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만 OBS는 절대 금액으로 조건이 부가되었고, 타 민방들은 매출 대비 제작비 투자비율로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당 방송사들이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가 재허가 과정에서 일정비율,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도록 요구한 것입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해당 방송사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이행조건으로 부가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 신청계획서에 냈던 그 투자계획을 미이행함에 따라 우리가 약속된 금액을 투자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지요?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재허가조건은 재허가 심사 당시에 방통위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약속으로 부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방송사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재허가 조건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재허가 조건의 이행은 100% 이행을 의미합니다. 단 1% 이행이 안 돼도 미이행으로 해서 우리들이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오늘 시정명령,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타당하게 잘 점검하셨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지만 공영방송사들 다 경영 위기상황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의 지적이 없더라도 상위직급 과다 문제, 그리고 과도한 비용의 문제들은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감사원의 지적사항, 그리고 국정감사의 지적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영방송사들이 위기를 체감하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상황도 체감 못 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위기로 느끼는데 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체감을 못 합니까? 그래서 방통위의 재허가조건, 감사원의 지적사항, 이것을 이행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경영을 효율화할 것인가, 이렇게 자발적

으로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요즘 공영방송사가 여러 가지 경영위기상황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노사가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노사의 각성과 또 그에 상응하는 경영효율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MBC 창사기념일에서 MBC 최승호 사장께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워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 MBC가 하고 있는 경영혁신이 성공을 한다면 예전 MBC의 명성, 역할을 회복하겠지만 만약에 지금 MBC가 하고 있는 경영혁신 노력들이 실패한다면 MBC가 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MBC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KBS에 대한 시정명령안,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재허가조건으로 부가하고 그것을 미이행한 것에 대해 다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 공영방송사들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개선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OBS나 광주 방송 부분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재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 해당 방송사들이 오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역민방들이 여러 가지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비방송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지역민방들은 SBS 네트워크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덕션이라기보다는 수중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매출이 많이 발생해서 제작비에 투여한다고 할지라도 프로그램당 제작단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급격하게 몇 십억씩 투자하기는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재허가 심사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지역방송들이 재허가를 받기 위해 가져온 계획을 그냥 수용하기보다는 위원회에서 그것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저도 사무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KBS 같은 경우 지금 지상파방송 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을 깊이 하시고, 저희가 요구한 내용이 그렇게 가혹하지도 않습니다. KBS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것을 요구한 것인데 저는 정말 KBS가 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의결사항

【 10시 02분 】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 (2018-69-570) (비공개)

7.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회의는 12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도 제6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15분 폐회 】